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 분석

이 민 식*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검찰의 수사 및 재판기록들을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 양적 자료와 경찰이 최근에 처리한 비교적 대규모의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 사례들에 대한 질적 자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경찰자료를 통해 마약류범죄 조직 및 연결망의 거시적, 구조적 측면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처리된 대규모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공범구조 또는 연결망의 특성은 수직적 측면이 위계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네트워크화 된 범죄조직의 형태에 근접하며, 거래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수직적 상호작용에 비해 수평적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검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소규모 공범연결망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자원의 흐름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범의 수는 3~6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범행상 주종관계는 주범과 공동정범이 다수였다. 셋째, 범죄유형은 사용사범이 국내 유통사범의 세배 가까이 되었다. 넷째, 공범들 간의 관계는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연결망 내에서의 상호작용 내용 또는 교환되는 자원의 흐름은 마약류, 돈 등 물질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여섯째,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는 명령·우세와 대등한 관계가 대부분으로, 전반적으로 공범들 간의 권력관계는 경찰자료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수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범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는 반복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마약류범죄는 대개 집단적인 현상이다. 마약류범죄는 마약류 생산범죄(밀조 또는 밀경), 유통범죄(밀수출입 또는 밀매), 사용범죄(투약, 흡연 또는 소지)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범죄들은 보통 단계적(생산->유통->사용)으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각 단계 내에서의 범죄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Philopon)]의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를 확보·공급하고 화학적으로 합성하는데 여러 명의 소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마약류의 유통 또한 여러 단계의 계층적, 연결망(network) 형태를 띠고 이루어진다. 최초 판매책(판매총책 또는 최고상선)은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중간 판매책에게 공급하고, 중간 판매책은 그것을 최종 판매책에게 공급한다. 물론, 중간 단계들은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마약류 유통은 그와 같은 위계적 또는 피라미드식 연결망 형태를 띤다. 말단 판매책은 여러 루트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시키는데, 마약류의 투약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럿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환각상태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도된다. 이처럼, 마약류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단독범죄가 아닌 공범(co-offending)의 형태로 이루어진다.¹⁾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사범의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1) 범죄의 유형에 따라 ‘집단적 형태의 위반율’(group violation rate)과 평균 공범수가 다르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마약류범죄와 기물파괴 또는 손괴(vandalism)는 공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Warr 1996, Hakkert et al. 1998, Weerman 2003을 보라).

및 연결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험적·분석적 연구의 중요성이란 측면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마약류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수사실무가나 형사법학자, 의료기관 및 사회사업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기법, 통제전략, 법적 대책, 치료 및 재활 기법 등 주로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사회과학자들에 의한 경험적이며 분석적인 기초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는 공범연구의 중요성이란 측면이다. 범죄학 및 형사정책에서 공범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범구조 또는 범죄연결망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²⁾ 마약류범죄는 본질적으로 공범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의 구조 및 연결망을 분석하는 일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범구조 및 범죄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형사사법기관과 민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예컨대, 범죄의 연결망을 파악, 그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범죄의 확산을 막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며, 재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망 특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다양한 범죄유형별로 그 공범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의 결실들이 축적될 때 우리나라의 범죄대응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를 대상

2) 서구에서는 부정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청소년 비행 등의 연구에 연결망 접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Waring 1993). 부정부패의 경우 대개 관료들과 민원인들의 복잡한 불법적 공생관계가 존재하며, 청소년 비행의 경우에도 흔히 비행청소년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Clark 1991, Frank 2001, McCord and Conway 2002, Samecki 1990).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정경유착이나 경찰 등 공직부패 구조를 연결망 접근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백완기 등 2000; 장준오 2001; 전수일 2001), 또한, 노성호 등(1999)이 비록 범죄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을 연결망 접근으로 분석한 바 있다.

으로 그 공범구조와 연결망 특성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논의

1. 공범의 정의

두 사람 이상의 범죄자가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통상 범죄참가형태(beteiligungsformen)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총칙 제2장 제3절에서 공범이란 제목으로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제30조), 교사범(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제31조), 그리고 중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제32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교사범, 중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

보다 구체적으로, 공범이란 협의로는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고, 보다 광의로는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criminal cooperation)을 말한다(Tremblay 1993). 그리고 이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은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 안에서 범죄자들은 공범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도 있으며, 서로 간에

3) 물론, 학자(예컨대, 이재상 2003)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을 공범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이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또는 거래)을 하는데, 그러한 상호작용은 직접적일수도 간접적일수도 있다. Warr(1996)는 이 경우를 지칭하기 위해 ‘범행 집단’(offending group) 또는 ‘공범연결망’(accomplice network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러한 최 광의의 공범의 개념을 채택하여 아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공범에 대한 이론

Weerman(2003)은 문헌에서 발견되는 공범에 관한 범죄학적 이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집단영향이론(group influence perspective) : 이 시각에서는 공범을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집단적 영향력의 필연적 결과로 본다. 대개 공범행위를 소년범죄의 집단적 특성이나 차별교제이론과 연결하는 범죄학자들(예컨대, Erickson & Jensen 1977; Shaw & McKay 1931; Sarnecki 1990; Warr 1996)이 이러한 견해를 갖는다. 이 이론은 범죄와 공범행위를 사회적 학습, 일탈적 정의의 습득, 집단압력과 같은 집단 내적인 과정의 결과로 본다. 사람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공범행위를 하고, 그렇게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사회적 보수를 받으며, 반대로 공범행위를 거부하면 비난에서부터 추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청소년 갱 집단 성원의 폭력행위나 조폭 등 범죄조직 성원들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사회적 선택이론(social selection perspective) : 집단영향이론이 소위 ‘사회실재론적’(social realistic) 인식론에 기초하였다면, 사회적 선택이론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므로 ‘사회명목론적’(social nominal) 인식론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선택이론은 집단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범죄학자들(예컨대, Glueck & Glueck 1950; Hirschi 1969; Kornhauser 1978)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범죄자들이 서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 형성되고, 자동적으로 공범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 시각은 범죄행위를 자기통제력의 결핍과 같은 범죄자 개인적 특성의 결과로 본다. 범죄자들은 서로 간에 유사한 범인성(criminogenic)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범죄의 기회가 주어지면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청소년들의 가게들치기나 충동적 강도질과 같은 자발적이며 조직화되지 않은 공범행위의 설명에는 적절하나, 보다 복잡한 형태의 공범행위나 소규모 집단들의 공범행위의 설명에는 제한적이다.

도구적 이론(instrumental perspective) : 이 시각에서는 공범행위가 범행의 수행을 더 쉽게 해주고, 더 수지맞게 해주고, 발각 및 체포될 위험을 감소시켜준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적당한 공범을 구하고 범행 시 협력하는 행위를 이론화하는 범죄학자들(McCarthy et al. 1998; Tremblay 1993)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범은 잠재적인 이윤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이다. 공범행위는 범행의 수행을 쉽게 하고 예기되는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이윤은 다른 공범과 분배해야 하고 따라서 공범의 상대방이 배신할 위험도 있다. 요컨대, 공범행위는 단독범보다

더 수행이 쉬우며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될 때 선택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역할분담이 있는 은행강도나 팀으로 움직이는 전문절도범과 같은 보다 복잡한 형태의 공범의 설명에는 적절하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며 자발적이거나 대규모인 범죄 집단의 설명에는 보다 제한적이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perspective) : 이 이론은 Homans (1961), Blau(1964), Thibaut와 Kelley(1959) 등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전통을 갖는 시각으로서, 최근에 Weerman(2003)은 이러한 교환론적 전통을 도구적 시각과 결합하여 공범행위의 설명에 적합한 기본 가정과 개념들을 제시해 주었다. 공범에 대한 사회적 교환이론의 가장 중요한 관념은 물론 공범행위가 재산(goods)을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재산’은 포획물이나 보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승인과 수용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⁴⁾ 사람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이유는 단독범행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보수를 재산의 교환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환은 그것이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와 바람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할 때 그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공범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범행위는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보수가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선택되는 것이다.

4) Weerman(2003)은 공범행위에서 교환되는 재산(goods)을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① 서비스(services: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② 포획물(catch: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이나 재산의 몫), ③ 보수(payment: 공범자가 주는 돈이나 재산), ④ 인정(appreciation: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 ⑤ 수용(acceptance: 구성원으로 받아들임), ⑥ 정보(information: 사람이나 문제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이론은 단독으로는 모든 공범행위의 특성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없다. 네 가지 이론은 다양한 공범행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기 일정한 유용성을 지닌다. 특히 마약류범죄에 있어서의 공범행위는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의 각 단계에서도 그리고 여러 단계들을 포괄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각기 일정한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모의 점조직들로 연결되는 마약류범죄에서의 공범행위나 거래 연결망을 설명하는 데에는 사회적 교환이론이 인간행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3. 마약류범죄와 연결망특성

Pearson과 Hobbs(2003, 2004)는 영국에서 일단의 마약류범죄(엑스터시와 흥분제 거래) 사례연구를 통해 중간수준의 마약 시장, 즉 중간시장(middle markets)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중간시장이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은 마약류를 최초 밀조 또는 밀수입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소비자(투약자)나 소매수준의 딜러들에게 넘기는 중개인 또는 매개인의 역할을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그들은 중간시장 연결망들을 그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A형)은 거래하는 마약의 양과 연결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경우였다. 이 부류에서는 시장의 수직적 측면은 수입과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간결한 거래의 연쇄 형태로서 비교적 단순해 보였으나, 수평적 측면은 거래 및 금전적 관계의 집락들이 많은 복잡한 형태를 보였다. 요컨대, 중간시장은 분절적이고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

하고, 사람들의 역할도 바뀌는 것이었다. 그래서 Pearson과 Hobbs는 이 부류에서는 우리가 마약류범죄 연결망에 대해서 흔히 상정하는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가 허구라고 하였다.

두 번째 유형(B형)은 네트워크화 된 전형적인 조직범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부류는 훨씬 더 규칙적인 거래관계, 안정적인 가격체계, 분별없는 폭력의 개입, 지리적 경계를 뛰어 넘는 피라미드식 부채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들 연결망에서는 거래관계의 형태가 복잡적이며, 정통 직원들로부터 독립적인 상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뚜렷한 장점이다. 그와 같은 적응력은 중간시장을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할뿐 아니라, 개인들의 활동을 연결망의 개별 단편들에 한정시키며, 따라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연결망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특성은 중간시장의 형태와 구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간시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마약사범들 간의 거래에서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게임의 법칙'이다. 범죄연결망의 개별 성원은 특정 영역이나 거래에서 요구되는 만큼만 알면 된다. 연결망 속의 자신의 위치에서 위나 아래 또는 가장자리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그들의 시야에 있지 않는 것이다.

4. 연결망이론의 기초

연결망이론이란 조직 간 또는 개인 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조직 간 또는 개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관계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사회구조와 인간행위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김용학 2004; 백완기 외 2000). 마약류범죄 공범구조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은 첫째,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공범들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과 그 성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공범들 간의 권력관계 내지는 범행상 주종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넷째 연결망지도 또는 공범조직도를 통하여 공범들 간의 연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범구조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마약류범죄 연결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밀조(경)자, ② 밀수자, ③ 최고상선, ④ 중간상선, ⑤ 소매딜러, ⑥ 알선자, ⑦ 소비자(투약자, 흡연자), ⑧ 자원. 밀조(경)자는 마약류를 최초 제조 또는 재배하는 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밀조(경)자가 최고상선(최초공급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합성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대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밀수입된 것이므로 국내 밀조사범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양귀비나 대마를 밀경하는 경우는 여전히 적지 않아 전체 마약류사범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밀수사범은 매년 2~3%정도 된다(대검찰청 2005). 밀수자 역시 최고상선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상선, 즉 판매책은 최고상선→중간상선→소매딜러의 형태로 연결되는 위계적 또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단계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선자는 상선이나 소매딜러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로부터 돈이나 다른 자원을 받고 그들을 서로 알선 또는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또한 연결망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연결망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자원은 연결망을 통해서 교환되는 재산이나 가치로서, Weerman(2003)이 분류한 바 있듯이 돈, 마약류, 무기와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 폭력행사, 성(性), 용역, 인정, 수용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의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들을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 양적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최근에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사례들에 대한 질적 자료이다. 전자의 경우, 본 연구자가 2002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마약류사범 처리실태 조사」의 자료들⁵⁾ 중 공범의 수가 3명 이상 11명 이하인⁶⁾ 사례 237건을 분석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처리한 대규모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사례들 중 조직 및 연결망의 특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들을 연구자가 선정한 것이다.

5) 이 연구에서는 1997~2001 동안에 전국의 6개 지방검찰청과 4개 지청(총 10개 기관) - 서울지검(본청 및 남부·북부·서부지청), 인천지검(본청 및 부천지청), 부산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전주지검 - 에서 처리한 약 32,000명의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전체 마약류사범의 약 97%가 유죄확정됨) 마약류사범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기관의 선정은 마약류사범의 처리건수와 마약류범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선정된 10개 기관은 전체 마약류사범의 약 70%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 2001년 기준). 기록조사의 연한을 과거 5년으로 한정된 것은 마약류사범의 경우 기록의 보존기간이 대부분 5년이기 때문이다. 표본은 먼저 연도별, 마약류별(마약, 대마, 향정), 지역별(또는 지방검찰청별)로 비례할당한 후에 계통적으로 표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총 사례의 수는 2,485건이었으나 자료의 누락이 많은 29건은 제외하여 총 2,456건이 최종 분석되었다. 조사에는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까지 포함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1심의 결과에만 한정하였다.

6) 공범의 수를 이렇게 한정된 것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자료 중 공범의 수가 11명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공범의 수를 최소 3명으로 정한 것은 공범의 수가 2명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을 하나의 연결망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범들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된 사례들의 구체적인 공범수는 <표 1>을 보라.

2. 공범연결망의 측정

공범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한 구조화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1) 이름영문이니셜 : 예) 홍길동의 경우 HGD 또는 HKT로 표기함,
- (2) 마약류범죄의 유형(복수응답가능) : ① 제조·재배, ② 수출입, ③ 국내유통, ④ 유통목적의 소지, ⑤ 사용·투약, ⑥ 사용목적의 소지, ⑦ 기타,
- (3) 본인과의 관계 : ① 배우자 또는 애인, ② 형제나 친척, ③ 학교친구나 선후배, ④ 고향친구나 선후배, ⑤ 사회친구나 선후배, ⑥ 직장동료, ⑦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 ⑧ 같은 범죄단체 성원, ⑨ 다른 범죄단체 성원, ⑩ 단순 거래자 관계, ⑪ 전혀 모르는 사람, ⑫ 기타1, ⑬ 기타2,
- (4) 상호작용 내용(복수응답가능) : ① 돈을 줌, ② 마약류 줌, ③ 정보를 줌, ④ 무기를 줌, ⑤ 폭력행사, ⑥ 성을 제공, ⑦ 용역제공, ⑧ 기타1, ⑨ 기타2, ⑩ 기타3,
- (5)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 : ① 명령·우세, ② 복종·열세, ③ 대등한 관계, ④ 알 수 없음,
- (6) 범행상 주종관계 : ① 주범, ② 공동정범, ③ 교사범, ④ 종범,
- (7) 공범과의 상호작용 빈도 : ① 일회적, ② 반복적.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 또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의 대규모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사례들의 경우 사건개요의 분석을 통

해 공범조직도를 그리고 그 연결망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재판기록들에 대한 양적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등 단순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그 연결망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전자는 마약류범죄 조직 및 연결망의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측면을, 그리고 후자는 연결망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자원의 흐름 등 보다 미시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IV. 분석결과

1. 대규모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사례 분석

아래에서는 경찰이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처리한 비교적 대규모의 마약류범죄 조직 검거사례들 중 그 연결망이 비교적 분명하고 특징적인 몇몇 선별된 사례에 대한 사건개요와 공범조직도를 보여준다. 앞의 세 가지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밀수되어 유통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인 필로폰과 관련된 사건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국내에서 재배되어 유통된 대마에 관한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그 연결망 형태상 대체로 마약류를 최초 밀조 또는 밀수입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소비자(투약자)나 소매수준의 딜러들에게 넘기는 중개 또는 매개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Pearson과 Hobbs(2003, 2004)가 규정한 바의 ‘중간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Pearson과 Hobbs의 중간시장 연결망의 특성에 관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본 논의들은 경찰

의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내용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완전한 공범구조 및 연결망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앞서 ‘게임의 법칙’이 언급된 바 있듯이, 마약범죄자들은 매우 은밀하게 움직이고 철저히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최고상선 등 범죄조직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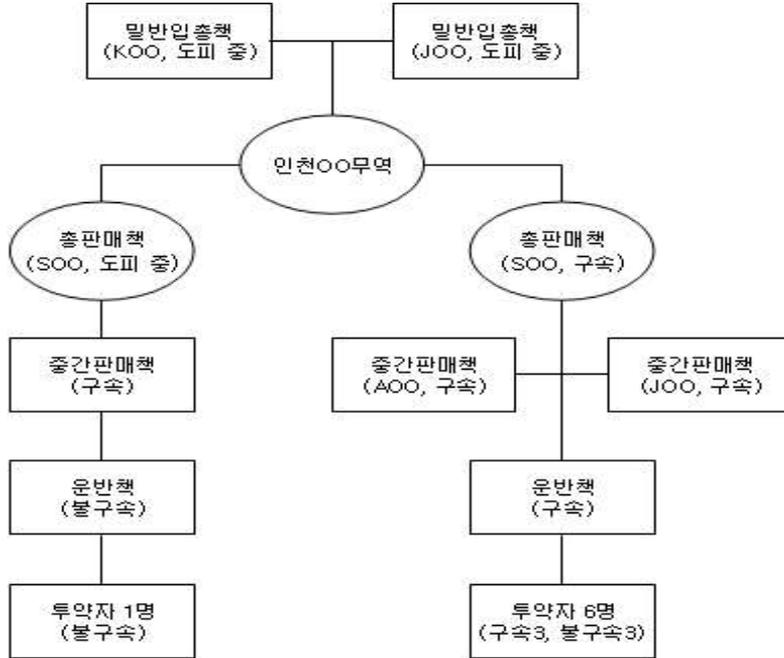
가. 필로폰 밀매조직 검거

<사건개요>

중국 단둥에서 완구자동차 안에 필로폰을 숨겨 선물용으로 위장한 후보따리상을 시켜 인천항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필로폰 193g 상당을 영업용택시와 퀵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 밀매한 판매조직책 등 13명(투약자 7명 포함)을 검거함 (○○경찰청, 2006.9). 피의자들은 교도소 동기 및 고향 선후배들로, 06.6.30 중국 단둥에서 장난감 자동차 안에 필로폰 50g을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하는 등 06.6.30.~8.15.간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93g 상당의 필로폰을 서울·경기 일대 지역판매책을 통해 유통시키고 이를 투약하였음.

<조직도>

본 사건의 조직상 특성은 외국(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밀반입사범과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총판매책, 중간판매책, 운반책, 그리고 투약자에 이르기까지 최초 제조 및 유통사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결망 요소들(가담자)이 다 망라되어 있으며, ‘인천○○무역’이라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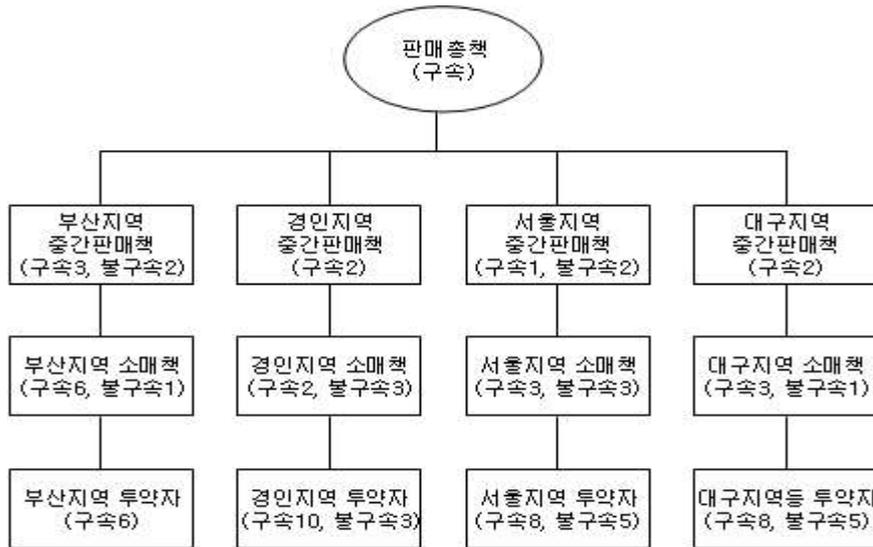
본 사건에서 연결망의 수직적 측면은 전형적인 위계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수평적 측면은 비교적 독립적인 두 개의 집락이 있을 뿐 (총판매책이 2명임)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중간판매책과 투약자 사이에는 나머지 세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운반책이 따로 있다. 상선은 10명 이내로 약한 범죄조직 형태를 띠고 있으나 네트워크화 된 전형적인 범죄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밀반입총책 2명과 총판매책 1명은 중국과 필리핀에 체류, 도피 중임). 마약은 수도권 일대에서만 유통되었고 거래된 양도 많지 않은 편이다. 밀반입은 동일한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비교적 규칙적이라 할 수 있으나, 국내 판매는 밝혀진 투약자가 많지 않고 그 규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 필로폰 판매조직 ‘000파’ 검거

<사건개요>

05.9~06.7 사이 부산항을 통해 중국 심양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 총 5kg이상을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지에서 판매한 부산지역 필로폰 판매조직 ‘000파’ 등 80여명을 국정원과 공조 수사하여 검거함(○○경찰청, 2006.7).

<조직도>



본 사건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사례이다. 연결망의 수직적 측면은 비록 구체적인 밀반입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반입사범의 존재가 가정되고 지역별 중간판매

책과 소매책을 갖춘 위계적 형태를 띠므로서 첫 번째 사례와 대체로 유사하다.⁷⁾ 그러나 그 수평적 측면은 수도권과 지방을 망라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계별 지역판매책도 여러 명인 상당히 복잡한 집락들로 되어 있다. 요컨대, 본 건의 연결망 형태는 전체적으로 피라미드형에 가깝다. 또한, 전체 상선이 판매총책을 포함하여 35명에 달하고 지역별로 조직화되어 있어 비교적 네트워크화 된 범죄조직의 모습을 보인다. 밀반입 및 국내 판매 기간이 비교적 길고 거래된 필로폰의 총량이 5kg가 넘는 점으로 보아 거래가 규칙적이고 연결망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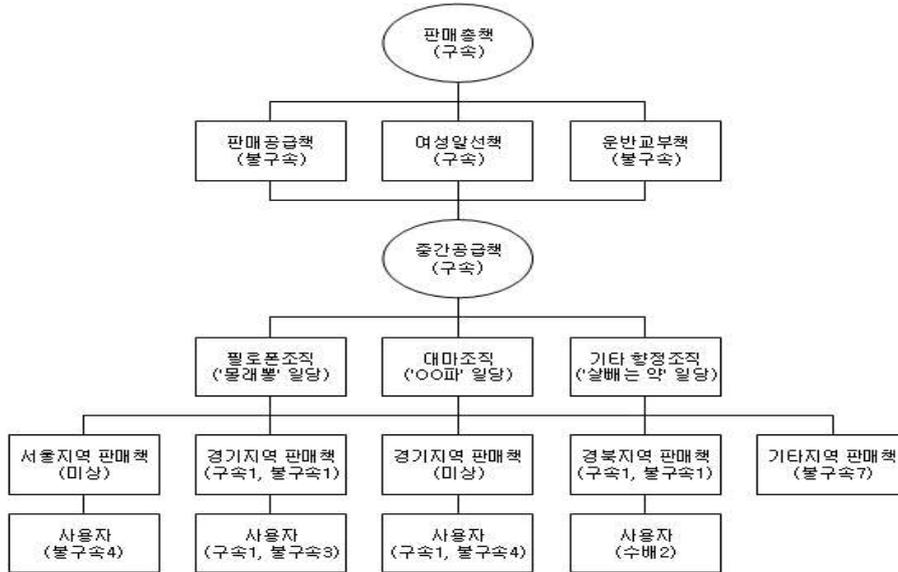
다. 부녀자 상대 ‘몰래뽕’수법 일당 검거

<사건개요>

부유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일명 ‘몰래뽕’ 수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후, 필로폰에 중독되게 만든 범죄조직원 13명을 포함, 관련 마약사범 총 29명을 검거함(○○경찰청, 2005.7). 피의자 ○○○ 등 13명은 교도소에서 만난 강·절도 전과자들로서, 03.12~05.1까지 서울·안산·분당·평촌 등지에 거주하는 부유층 여성들을 상대로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환각상태의 여성과 변태적인 성관계(스와핑, 그룹섹스 등)를 한 뒤 그 약점을 이용, 폭행·협박하면서 필로폰에 중독케 하였으며, 같은 ○○○ 등 16명은 위 일당과 연계되어 상습적으로 대마 및 향정(펜디메트라진)을 매매·흡연·투약하였다.

7) 본 사건에서는 중간판매책과 투약자 사이에 소매책이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사례와 차이가 난다.

<조직도>



이 사건은 마약류 밀반입 또는 밀조(경) 조직과의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결망 구조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최고상선인 판매총책 밑에는 판매 및 공급을 담당하는 판매·공급책, 운반 및 교부를 담당하는 운반·교부책이 있으며, 특히 이 범죄조직이 여성을 주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알선책을 두고 있다. 이들은 최고상선의 부하들로서 중간공급책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중간공급책의 아래에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된 필로폰조직(‘몰래뽕’ 일당), 대마조직(‘○○파’ 일당), 기타 향정조직(‘살빼는 약’ 일당)이 있으며, 이 조직들은 각 지역 판매책을 동원하여 부녀자 등 사용자들에게 마약을 판매·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그 조직화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공범구조도 앞의 두 사례와는 많이 다르다. 먼저 연결망의 수직적 측면을 보면 판매총책 이하와 중간공

급책 이하가 서로 비교적 독립적인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연결망의 수평적 측면은 한편으로는 범행의 역할 또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분업화되어 분절적이지만, 마약류의 종류별 유통은 지역의 경계를 뛰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유동적이다. 요컨대, 이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연결망 형태는 마치 큰 피라미드 위에 작은 피라미드가 얹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의 목적이 마약류를 단순히 판매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통된 마약류의 총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거래관계는 비교적 규칙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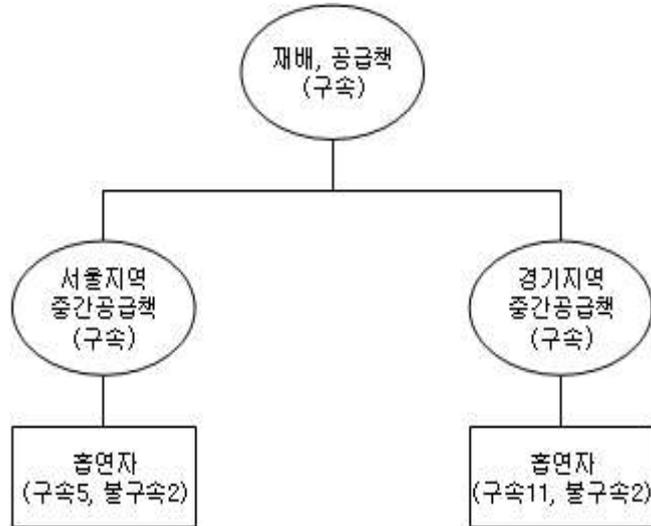
라. '지역사회모임'을 통한 대마사범 검거

<사건개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정기모임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회' 등 수도권 지역 대마사범 23명을 검거함(○○경찰청, 2005.8). 피의자들은 서울 ○○동 지역모임인 '○○회' 회원들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월 1회 계곡, 유원지 등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후 2005.1~7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조직도>

이 사건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재배한 자가 서울, 경기지역 중간 공급책을 거쳐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유통시킨 사건으로, 밀반입 과정이 없으며 유통경로도 간단하여 그 연결망의 형태가 단순한 경우이다.



이상에서 경찰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처리된 대규모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공범구조 또는 연결망의 특성은 Pearson과 Hobbs(2004)의 영국 사례들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두 가지 형태가 상당부분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첫째, 수직적 측면이 위계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화 된 범죄조직의 형태에 근접하며, 셋째, 거래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넷째, 수직적 상호작용에 비해(예컨대, 지역판매책들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소위 '게임의 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Pearson과 Hobbs가 분류한 B형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은 어디까지가 본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별된 일부 사례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시론적인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모든 마약류범죄에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검찰의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앞에서 마약류범죄 조직 및 연결망의 보다 거시적·구조적 측면을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비교적 적은 규모(3명 이상 11명 이하)의 공범연결망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자원의 흐름 등 보다 미시적인 측면을 검찰의 수사·재판기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공범의 수

<표 1> 공범의 수(본인포함)

구 분	사례수 (%)	빈도 (%)
3명	119 (50.2)	357 (36.4)
4명	48 (20.3)	192 (19.6)
5명	31 (13.1)	155 (15.8)
6명	17 (7.2)	102 (10.4)
7명	9 (3.8)	63 (6.4)
8명	8 (3.4)	64 (6.5)
9명	2 (0.8)	18 (1.8)
10명	2 (0.8)	20 (2.0)
11명	1 (0.4)	11 (1.1)
계	237 (100.0)	982 (100.0)

먼저 <표 1>에서 공범의 수를 살펴보면, 그 수가 3명인 사건의 사례수가 119건으로 전체의 절반(50.2%)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범수가 3~6명인 경우가 전체의 약 91%로 거의 대부분이다.

나. 범행상 주종관계

<표 2> 범행상 주종관계

구 분	빈 도	%
주 범	102	10.4
공동정범	625	63.6
교사범	1	0.1
방조범	188	19.1
미 상	66	6.7
계	982	100.0

<표 2>에서 범행상 주종관계를 보면, 주범이 102명(10.4%)이고 공동정범이 625명(63.6%)으로서 전체의 74%가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비중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범인 방조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188명(19.1%)이고, 교사범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범죄유형

<표 3>에서 범죄유형(복수응답)을 보면, 마약류범죄 연결망의 최상위에 위치할 수 있는 제조 및 재배 사범이 1.1%, 수출입사범이 2%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마약류사범 중 밀조, 밀수, 밀경 사범이 10%내외로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낮은 비율이다. 그 외 국내 유통사범은 유통목적의 소지를 포함하여 24.1%이고, 사용사범은 사용목적의 소지를 포함하여 7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범죄유형(복수응답)

구 분	빈 도	%
제조·재배	41	1.1
수출입	78	2.0
국내유통	565	14.5
유통목적의 소지	373	9.6
사용·투약	2,296	59.0
사용목적의 소지	447	11.5
기 타	94	2.4
계	3,894	100.0

라. 본인과의 관계

<표 4>에서 공범들 간의 관계 자료를 보면, 사회친구나 선후배(36.1%), 고향친구나 선후배(19%), 학교친구나 선후배(6.3%), 직장동료(4.5%),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2%)와 같이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모두 67.9%로서 전체의 2/3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연령이나 성별, 범죄경험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공범과 교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Reiss & Farrington 1991; Warr 1996; Weerman 2003)의 주장이 설득력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공범들이 배우자나 애인사이인 경우가 4.1%, 형제나 친척이 0.9%이고, 단순 거래자 관계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본인과의 관계

구 분	빈 도	%
배우자 또는 애인	114	4.1
형제나 친척	26	0.9
학교친구나 선후배	173	6.3
고향친구나 선후배	523	19.0
사회친구나 선후배	996	36.1
직장동료	124	4.5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	56	2.0
같은 범죄단체 성원	-	-
다른 범죄단체 성원	-	-
단순 거래자 관계	184	6.7
전혀 모르는 사람	524	19.0
기 타	36	1.3
계	2,756	100.0

마. 상호작용의 내용

<표 5>에서 연결망 내에서의 상호작용 내용 또는 교환되는 자원의 흐름을 보면 역시 마약류를 줌(62.5%)과 돈을 줌(25.3%)이 가장 많게(87.8%) 나타났는데, 이는 마약류범죄가 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거래로 인식되는 이유가 된다. 이에 비해 정보를 줌(4.7%), 용역제공(2.5%), 성(性)제공(2.3%), 폭력행사(0.5%)와 같은 비물질적인 상호작용이나 자원의 흐름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호작용의 내용(복수응답)

구 분	빈 도	%
돈을 줌	573	25.3
마약류를 줌	1,417	62.5
정보를 줌	106	4.7
무기를 줌	29	1.3
폭력행사	11	0.5
성을 제공	52	2.3
용역제공	56	2.5
기 타	24	1.1
계	2,268	100.0

바.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

<표 6>에서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를 살펴보면 명령·우세와 대등한 관계가 각각 2.9%와 70.6%인데, 이를 합치면 73.5%로서 <표 2>에서 주범과 공동정범을 합한 74%와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그리고 공범에 대해 복종·열세인 경우는 3.7%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공범들 간의 권력관계는 수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권력관계의 양상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앞에서 경찰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비교적 대규모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연결망이 위계적 상호관계와 범죄조직형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반해, 검찰 자료를 통해 본 소규모 범죄의 경우 수평적 권력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표 6>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

구 분	빈 도	%
명령·우세	83	2.9
복종·열세	105	3.7
대등한 관계	1,996	70.6
알 수 없음	642	22.7
계	2,826	100.0

사. 공범과의 상호작용 빈도

<표 7> 공범과의 상호작용 빈도

구 분	빈 도	%
일회적	674	29.3
반복적	1,625	70.7
계	2,299	100.0

끝으로 <표 7>에서 공범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보면 반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70.7%로서 일회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제 이 끝맺는 글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정책적 함의와 미래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첨가하고자 한다.

먼저, 경찰자료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마약류범죄 조직 및 연결망의 거시적, 구조적 측면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처리된 대규모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공범구조 또는 연결망의 특성은 Pearson과 Hobbs(2004)가 분류한 B형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특성은 사례별 차이는 있으나, 수직적 측면이 위계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네트워크화된 범죄조직의 형태에 근접하며, 거래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수직적 상호작용에 비해 수평적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게임의 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검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소규모 공범연결망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자원의 흐름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범의 수는 3~6명인 경우가 전체의 약 91%로 대부분이었다. 둘째, 범행상 주종관계는 주범과 공동정범이 전체의 74%, 방조범(종범)이 19.1%였다. 셋째, 범죄유형은 국내 유통사범이 24.1%, 사용사범은 70.5%였으며, 제조 및 재배 사범과 수출입사범은 3.1%에 불과하였다. 넷째, 공범들 간의 관계는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모두 67.9%였고, 단순 거래자 관계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25.7%였다. 다섯째, 연결망 내에서의 상호작용 내용 또는 교환되는 자원의 흐름은 마약류를 주거나 돈을 준 경우가 절대 다수인 87.8%였으나, 정보, 용역, 성(性)의 제공과 폭력 행사 등 비물질적인 경우는 10%에 불과하였다. 여섯째, 본인의 공범에 대한 권력관계는 명령·우세와 대등한 관계의 합이 73.5%이고 복종·열세인

경우는 3.7%로서, 전반적으로 공범들 간의 권력관계는 수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자료를 통해 본 비교적 대규모 마약류범죄에서의 경우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공범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는 반복적인 경우가 일회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구조 또는 범죄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그러한 연구는 형사사법기관과 민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범죄의 구조와 연결망을 파악, 그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막으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범죄유형별로 그 공범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들이 축적될 때 우리사회의 범죄대응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를 대상으로 그 공범구조와 연결망 특성들을 비교적 최초로 분석한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아직은 시론적 연구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며,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조사가 갖는 일반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특히 경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자가 연결망이 비교적 분명하고 특징적이라고 판단한 소수의 선별된 사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가능성을 크게 제한받는다. 또한 검찰자료도 공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며, 수사·재판 기록들도 공범들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같은 보다 정밀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노성호 등. 199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04. 마약류범죄백서 2003.
- 백완기 등. 2000. “공직부패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 34권 제2호.
- 신의기 등. 2002. 마약류사범 처리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 2003. 형법총론, 박영사.
- 장준오. 2001. 부패: 1980~90년대 정경유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수일. 2001. “경찰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제5호.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Clark, R. D. 1991. *Companions in Crime: An Analysis of Co-offending among Juveniles*, Ph.D. Dissertation, SUNY Albany.
- Erickson, M. L. and G. F. Jensen. 1977. “Delinquency is Still Group Behavior! Towards Revitalizing the Group Premise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J.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8:262-73.
- Frank, Ove. 2001. “Statistical Estimation of Co-offending Youth Networks”, *Social Networks* 23:203-214.
- Glueck, S. and E. Glueck.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Hakkert, A. et al. 1998. *Groepsriminaliteit* (Group Crime), Den Haag: Ministerie van Justitie.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Homans, G. C. 1961. *Social Behaviour: Its Elementary Form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Kornhause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cCarthy, B. et al. 1998. "Uncertainty, Cooperation, and Crime: Understanding the Decision to Co-offend", *Social Forces* 77:155-76.
- McCord, J. and K. P. Conway. 2002. "Pattern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o-offending" in E. Waring and D. E. Weisburd, *Crime and Social Organiz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2002.
- Pearson, G. and D. Hobbs. 2004. "E' is for Enterprise: Middle Level Drug Markets in Ecstasy and Stimulant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2:565-576.
- _____. 2003. "King Pin? A Case Study of a Middle Market Drug Broker", *The Howard Journal* 42:335-347.
- Samecki, J. 1990. "Delinquent Networks in Sweden", *J. of Quantitative Criminology* 6:31-50.
- Shaw, C. R. and H. D. McKay. 1931. *Report on the Causes of Crime*, Vol. I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 Thibaut, J. W. and H. H. Kelley.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remblay, P. 1993. "Searching for Suitable Co-Offenders", in R. V. Clarke and M. Felson (eds.),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5, p.17-36.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Waring, E. J. 1993. *Co-offending in White Collar Crime: A Network Approach*,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Weerman, F. M. 2003. "Co-Offending as Social Exchange: Explaining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 *British J. of Criminology* 43:398-416.

Co-Offending Structure in Drug Crime: A Network Approach

Lee, Min-Sik*

This article analyze the co-offending structures and networks of drug crimes in S. Korea through empirical analyses on crime records held by the police and prosecutory authorities. The data are composed of two parts: one from the police and the other from the prosecution. The former consists of some big size of crime cases and is for analyzing the macroscopic and structural aspects of crime networks, while the latter consists of 237 smaller size crime cases and is for analyzing some microscopic inter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between criminals within the networks. The results are also presented in two different ways according two data type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also suggested in the conclusion.

주제어 : 마약류사범, 공범(행위, 구조), 연결망이론(접근)

Keywords : Co-offending, Drug Crime, Network Approach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Ph.D. in Criminology